계엄법 전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399

발의연월일: 2024. 12. 11.

발 의 자:정을호·안호영·윤종군

허 영·박정현·이훈기

김동아 • 신정훈 • 박선원

한창민 · 강준현 · 신영대

이병진 • 전진숙 • 서영교

조정식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며 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사법뿐만 아니라 입법까지 장악하려 했으나, 헌법에 따른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190명의 참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계엄 해제를 요구하고 의결하여, 반헌법적이고 친위 쿠데타적인 계엄령은 6시간만에 종결됐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계엄은 총 17차례로, 그 과정과 결과는 반민주적이고 폭력적이었으며, 권력강탈과 독재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음. 그리고 우리 국민은 독재의 역사를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해 수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했음.

이에, 계엄령이 권력강탈과 정권유지와 독재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

되지 않도록 계엄령의 선포와 해제, 지휘·감독과 관리 등에 대해 절 차적 타당성과 집행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 민주적 절차와 공정한 계 엄관리를 이루도록 하고자 함. 법률 제 호

계엄법 전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계엄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주적 절차와 공정한 계엄 관리를 위하여 계엄 (戒嚴)의 선포와 그 시행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 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 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 한다.
 -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 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 ⑤ 대통령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엄을 선포하거나 제4항에 따라 변경하기 전에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 포를 건의할 수 있다.
- 제3조(계엄 선포의 공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국회에 통고(通告)하고, 국회의 동의(同義)를 얻어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하고, 국회의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한다. 다만, 국회 폐쇄 등의 사유로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는 국회의장은 대통령령에 따른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 제5조(계엄사령관의 임명 및 계엄사령부의 설치 등) ① 계엄사령관은 합동참모의장 또는 현역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② 계엄사령관의 계엄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계엄사령부를 둔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이 된다.
 - ③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이 2개 이상의 도(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

자치도를 포함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보조할 지구계엄사령부(地區戒嚴司令部)와 지구계엄사령부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역계엄사령부를 둘 수 있다.

- ④ 계엄사령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감독) ①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을 직접 지휘·감독한다. 다만, 계엄지역이 2개 미만의 도(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인 경우 국방부장관이 지휘·감독할 수 있 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엄사령관을 지휘·감독할 때 국가정책 및 대외 관계에 대한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7조(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 ① 대통령이 제4조제1항에 따라 비상계 엄을 선포함과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행정사무와 사법사 무를 관장한다.
 - ② 대통령이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계엄을 선포함과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행정사무를 관장한다.
- 제8조(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 ① 비상계엄지역의 경우 행정기관(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사법기관이 계업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고, 경비계엄지역의 경우 행정기관만 계업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②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지휘·감독 할 때는 주무장관과 행정구역 최고책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

- 고, 해당 계엄지역의 최고책임자 또는 주무부처의 장(법원의 경우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체포·구금(拘禁)·압수·수색을 실시할 수 있고, 거주·이전 등에 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 내용을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 ②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동원(動員)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軍需)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등록과 반출금 지를 명할 수 있다.
 - ③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 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燒却)할 수 있다.
 - ④ 계엄사령관이 제3항에 따라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 지역,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그 재산의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과 그 재산의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재산의 파괴 또는 소각에 대한 보상) ① 대통령은 제9조제3항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② 국방부장관은 미리 보상청구의 기간 및 절차 등 보상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③ 국방부장관은 보상금 지급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상 대상자에게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④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재산의 파괴 또는 소각으로 인한 손실액을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서, 확인서, 사진 등 증명자료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보상기준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손실액의 산정은 파괴 또는 소각으로 인하여 재산이 멸실될 당시의 과세표준과 감정평가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정한다.
- 제12조(보상 제외) 파괴 또는 소각으로 인하여 멸실된 재산이 국유재 산이거나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 제13조(공탁)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보상금을 보 상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支院)에 공탁 (供託)하여야 한다.
 - 1. 보상대상자가 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0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 지

급통지서에 응답하지 아니한 경우

- 제14조(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보상청구권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공고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계산한다.
- 제15조(비상계엄하의 군사법원 재판권) ① 계엄지역에서 제20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재판은 관할법원이 한다. 다만, 계엄사령관은 필요한 경우 군사법원이 재판하게 할 수 있다.
 - 1. 내란(內亂)의 죄
 - 2. 외환(外患)의 죄
 - 3. 국교(國交)에 관한 죄
 - 4. 공안(公安)을 해치는 죄
 - 5. 폭발물에 관한 죄
 - 6. 공무방해(公務妨害)에 관한 죄
 - 7. 방화(放火)의 죄
 - 8. 통화(通貨)에 관한 죄
 - 9. 살인의 죄
 - 10. 강도의 죄
 - 11.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 1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 13.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 죄
- ② 비상계엄지역에 법원이 없거나 해당 관할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 제16조(불법적 계엄) 누구도 「대한민국헌법」 및 이 법에 규정된 계엄 선포의 사유·목적에서 벗어나거나 관련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계엄을 선포 또는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7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경우 동시에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해제하여야 하고,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즉시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해제하여야 한다.
 - ②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도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 제18조(행정·사법 사무의 평상화) ① 계엄의 해제와 동시에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평상상태로 복귀한다.
 - ② 비상계엄 시행 중 제15조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계속 중인 재판사건의 관할은 비상계엄 해제와 동시에 일반법원에 속한다.
- 제19조(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동의 등) ① 대통령은 제4조에 따라 국회가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고 국회의원의 신변을

보호하여야 한다.

- ②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국회 동의 또는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의 국회 회의 참석을 방해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0조(벌칙) ① 제2조, 제4조 및 제16조를 위반하거나, 이에 조력한 사람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7조를 위반하여 계엄을 해제하지 아니하거나, 제19조를 위반 하여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을 방해한 사람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해당 보상금의 3배 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 금액까지 벌금을 과 (科)할 수 있다.
 - ④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거나 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⑤ 제3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⑥ 제3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